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람	의장

제1717호 2022. 12. 1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3호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_____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6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_____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7호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_____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_____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1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_____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_____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30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_____ 31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73호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25호(2021. 7.12.)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
 - 면 적: 228,8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019년~2022년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2년 12월 12일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역 전체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에 의거 준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관계 법령에 따름 (50% 이하)
		준공업지역	• 관계 법령에 따름 (70% 이하)
	용적률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관계 법령에 따름 (300% 이하)
		준공업지역	• 관계 법령에 따름 (400% 이하)
높 이		• 관계 법령에 따름	

◦ 공동이용시설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	비 고
구 분	용 도	프로그램	가좌동 210-10	523.4m ²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주차장 및 마을관리소			
지상2층		마을신문사 및 50+활력센터			
지상3층		다목적실 및 놀이방			
지상4층		마을도서관 및 게스트하우스			
옥 상		태양광시설 및 빗물받이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별지 제21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계																	
	1	서구 가좌동 210-10	-	대지	523.4	523.4	대지	준공업 지역	설명만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16, 다동 110호	공장/ 철근 콘크리트조	1동/3층	861.99	설명만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16, 다동 110호	근저당권 (토지, 건물)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76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2-167(2022.12.5.)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중 잘못 표기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2.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17번지

3.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석남동 일원	2,093,078.8	-	2,093,078.8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 공업용지(I)(변경)

· 기정

가구번호	가구면적(㎡)		필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I	54,424.2	54,424.1	1	12,502.3	1	12,502.3	
			2	12,501.5	2	12,501.5	
			3	15,032.6	3	15,032.6	
			4	14,387.8	4	14,387.7	0.1㎡ 감소

· 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필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I -1(3)	54,424.2	54,424.1	1	12,502.3	1	12,502.3	
			2	12,501.5	2	12,501.5	
			3	15,032.6	3	15,032.6	
			4	14,387.8	4	14,387.7	0.1㎡ 감소

※ 변경사유: 가구번호 표기 오류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77호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26호(2021.7.12.)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구 신현동 146-6번지 일원
 - 면 적: 75,026.8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020년~2023년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2년 12월 12일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역 전체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관계 법령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관계 법령에 따름 (250% 이하)
	높 이		• 관계 법령에 따름

◦ 공동이용시설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	비 고
구 분	용 도	프로그램	신현동 140-88	154㎡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주민모임공간, 공구대여소			
지상2층		마을관리소, 사무실			
지상3층		청소년공간			
옥 상		옥상 가드닝, 쉼처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별지 제21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수용	1	서구 신현동 140-88	-	잡종지	154.0	154.0	잡종지	제2종 일반주 거지역	최재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7길 36, 101동 1106호(양평동4 가,성원아파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대표 김정선)
 - 가. 법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 나. 대표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1-1번지 외 33필지
 - 나. 대지면적 : 38,244㎡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43,659.2177㎡ (지하 3층, 지상 27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355,553,021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23.01.02. ~ 2025.12.31.
5.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제 처리사항
 - 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33번길 17-9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12.1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2-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06-4	인천광역시 서구 왕정로133번길 17-9 (왕길동)	20081231	왕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9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414 (가정동)	20090922	도로구간 내에 있는 가정동, 가차동의 마릿글자와 석남동의 마릿글자를 따서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19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곁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5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295 (가정동)	20090706	옛 견지촌 뒷산의 원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37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27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6	인천광역시 서구 굽곡동 377-8, 377-9	인천광역시 서구 분수대로 1636-8 (굽곡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분수대가 있음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8-2, 60, 60-1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1-1 (왕길동)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8	인천광역시 서구 월왕동 394-15, 394-16, 394-17, 394-40, 394-4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 91 (월왕동)	20190121	북항배후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왕동 654-12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402번길 29-5 (경왕동, 열케이 빌리지)	20090922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열케이 빌리지
1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0-1, 50-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411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변경	
1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7-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415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변경	
1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413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변경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65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65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47 (청라동)	20180827	청서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23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굽곡동 741-2	인천광역시 서구 소달로 57 (굽곡동)	20191223	몸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이르는 순 우리말에서 착안	주식회사 해침에스티 사옥
1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736 (마전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인천원당소방서 (경단산도시 영유17블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2-12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25 (왕길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25 (왕길동)	소유자 신청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왕길동 103-2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25 (왕길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27 (왕길동)				왕길동 103-28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2-12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82번길 16-5 (가좌동)	건물 말소	20090706	열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82번길 16-7 (가좌동)	건물 말소	20090706	열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19 (황길동)	건물 말소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동우
4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17 (황길동)	건물 말소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연희
5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15 (황길동)	건물 말소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호성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732-13 (마전동)	건물 말소	20081231	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2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2. 12. 12. ~ 2022. 12. 26.(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02구4721 등 11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5,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5)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102구4721	싼타페(SANTAFE)	**캐피탈(주)	2022.11.30
2	238머8037	E220 d Cabriolet	***캐피탈(주)	2022.11.25
3	150거6522	G80	김*호	2022.11.22
4	92구4642	포터 II 내장탑차 (PORTER II)	김*호	2022.11.21
5	64나3962	그랜저 하이브리드	***캐피탈 주식회사	2022.11.16
6	196오1481	짚 그랜드 체로키 L	***캐피탈 주식회사	2022.11.15
7	283버7752	A8L 50 TDI quattro	**캐피탈(주)	2022.11.15
8	18하3448	스파크 1.0	***캐피탈 주식회사	2022.11.10
9	69도4675	모닝	박*호	2022.11.08
10	267나1234	McLaren 720S Coupe	**캐피탈(주)	2022.11.07
11	04무7646	카니발	박*득	2022.11.0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2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훈령예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2. 제정이유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나. 청원심의회 원칙(안 제4조)
- 다.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구성 및 임기 등 (안 제5조 ~ 제9조)
- 라. 청원심의회 운영, 개최요구 및 자료제출(안 제10조 ~ 제12조)
- 마. 비밀준수 의무, 간사 및 수당(안 제14조 ~ 제15조)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서식: 붙임 ‘의견제출서’ 참조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제2청사)
인천서구청 감사담당관(제2청사 13층 조사팀)
- 연락처: ☎ 032-560-4573 (팩스 032-560-2705)

5.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부.
-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 “처리부서”란 접수된 청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 원칙)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

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구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부서의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청원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심의회 개최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또는 실무자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5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제10조제2항 관련)

안 건	
일 시	년 월 일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제11조제3항 관련)

안 건	
일 시	년 월 일
심 의 결 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위원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 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제11조제2항 관련)

요구 부서			
청원 사항	청원명		
	청원인 성명	청원인 생년월일	
	청원 요지		
요구 사유			
요청 시기			
검토 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p>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귀중</p>			

[별지 제4호 서식]

출석통지서(제12조제4항 관련)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p>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p>
<p>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p> <p>○○○ 귀하</p>	

관계법령 발췌

■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 위원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청원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30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결을 얻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감면내용

가.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를 면제한다.

나.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단, 면제되는 세액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기타

-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